

혐의 많다면서 증거는 ‘빈손’... 쳇바퀴 돈 70차례 재판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1 혐의와 증거

1심 경영권승계 뇌물·상장 특혜 등 증거 제시 못하고 의심수준서 그쳐 2심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특혜도 혐의 입증 못하고 공소장만 고쳐

‘세기의 재판’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월 5일로 예정됐다. 2017년 1월 16일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며 재판을 예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있었던 70차례의 재판 과정을 5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판결만을 남겼다. 사진은 이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검검사. /연합뉴스

어려면 주가가 낮게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공모가 13만6000원에 시가총액 9조원 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주당 41만6000원, 시가총액 27조5246억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상위 9위에 올랐다.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커 나스닥이 아닌 코스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한국거래소 관계자 증언에 부합하는 결과다.

재판 도중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재판마다 달라진다”며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양”이라고 말을 흐리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승계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2심에서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나 특혜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공소장을 고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1심에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판결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단순 뇌물죄’를 추가했고, 단순 뇌물죄로 기소했던 승마지원에는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1심에서 확인된 3차례 독대에서 부정청탁이 확인되지 않자 그 독대에 앞서서 ‘0차 독대’를 만들었다. 다만 독대에서 나는 대화는 물론 실제 독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상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까지 1심 53차례, 2심 17차례로 총 70번의 재판이 열렸다.

1심과 2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이라는 뇌물을 제공했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협조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처분 주식 감량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병원 특혜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의 혜택은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씨에게

돌아갔으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의 ‘뒷배’를 보겠다는 논리다.

또한 삼성이 받은 특혜들은 이견희 삼성 회장의 뒤를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은 1심 공판에서 “삼성으로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였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강하게 형성됐다.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2심에서도 박 특검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

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의 강경한 발언과 달리 재판에서는 이러한 혐의들이 입증되지 않았다.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특검이 의심수준을 넘어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특혜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대표적으로, 특검의 주장대로만 금융지주로 전환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전환에 실패했다.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청탁 때문에 규정까지 개선하며 코스피에 상장시켰다는 특검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

美 ‘이란 제재면제’ 연장... 코트라 “韓 기업 한숨돌려”

단기적으로 악영향 크지 않을 듯 트럼프 이번 인증 ‘마지막’ 공언 대대적 수정에 맞설 대비책 필요

이란에 진출해 있거나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 인증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인증이 ‘마지막’이라고 공언하고, 향후 대대적인 수정을 조건으로 내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코트라(KOTRA)는 14일 펴낸 ‘이란 핵합의 현황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 JCPOA 진행 경과	
2015.07.14	합의 확정일 ‘P5+1’-이란간 핵협상 최종 타결
2015.10.18	합의 채택일 ‘P5+1’-이란간 법적·행정적 준비 및 JCPOA 합의 이행
2016.01.16	합의 이행일 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이행사항 확인
*이란 제재해제 관련 UN안보리 결의안 효력 발생	
*미국과 EU는 이란 제재 유예조치 시행, 대다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허용	
2017.04.18·2017.07.17	핵합의 인증 미행정부 이란 핵합의 준수 인증, 의회 보고
2017.10.13	핵합의 불인증 미 트럼프 대통령 이란핵협상 불인증 선언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의 핵합의 조건부 인증 이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단기적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이 침착하게 비즈니스에 전념할 것

을 주문했다. KOTRA에 따르면 JCPOA는 2015년 7월 당시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합의로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위협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천명해 왔다. 이란 역시 자국이 먼저 JCPOA를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의 예상을 깨고 이번엔 이란 제재 유예조치 연장에 사인하면서 JCPOA는 당분간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유예 조건으로 JCPOA의 대폭적인 수정을 내건 만큼 앞으로 주요 당사국간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당장 120일 안에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핵협상 주제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 이란 현지에서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유예 결정에는 120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붙었다. 120일이 지나면 다시 면제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JCPOA 수정이 없을 땐 이것이 마지막 제재면제 연장임을 강조한 것이다.

KOTRA는 만약 120일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시킬 경우 우리 기업의 이란 비즈니스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재가 복원되면 그동안 급물살을 타온 각종 프로젝트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에 따라 추진된 각종 정유시설 및 플랜트 공사와 사우스파르스(South-Pars) 등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에 빠질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대림그룹 “순환출자 해소·일감몰아주기 근절”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쇄신안 발표 계열사 내부거래 점검 등 투명성 ↑



대림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경영쇄신 계획’을 내놔다.

대림그룹은 14일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순환출자 완전 해소(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림그룹은 이해육 부회장 등 개인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거래 단절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은 올해부터는 신규 계열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령상 허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계열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계열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단절하거나 외부 사례를 참고해 거래 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거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외부업체·중소기업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육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도 상반기 내 법적 검토를 거쳐 처분방식 등을 결정해 정리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계열사 내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공식화한다. 내부거래위원회에는 보고 청취권, 직권 조사 명령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림그룹은 그룹 내 순환출자를 올해 1분기 내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림그룹지배구조에는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구조가 있다.

대림그룹은 “해당 순환출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대림그룹은 기존 순환출자를 선제적으로 완전 해소해 보다 투명하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림은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2%를 처분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리튬배터리 내장형 ‘스마트가방’ 운송제한

대한항공 오늘 출발 항공편부터 기내휴대수하물 반입으로도 불가



최근 항공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이 일부 제한된다. 스마트 수하물가방이란 리튬배터리를 내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한 위치 추적, 캐리어 무게 측정, 전동 이동, 자동 잠금, 충전 등의 편의 기능을 갖춘 가방이다.

대한항공은 15일 출발 항공편부터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모델을 위탁 수하물로 탑승하거나 기내에 휴대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가 가능한 모델의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 탑승이 가능하다. 분리한 리튬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만약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스마트 수하물 가방과 관련해 내부의 리튬배터리로 인해 과열이나 발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다. /양성문 기자 ysw@